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19나83931 판결 [계약금반환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19나839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단5028563 판결

전 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안왕선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광현

변론 종결 2020. 10. 20

판결 선고 2020. 12. 22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단502856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 179, 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 부터 이 사건소장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6행의 '안내하였다.

'를 '안내하였고,이 사건 호텔은 2018. 10.30. 사용승인을 받았다.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정진원판사 유동균판사 윤동연